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사업
제5기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 사업 운영단체 공모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예술가 지원·육성 및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5기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사업 「또따또가」 운영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1. 11. 30.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제5기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 운영기간: 2022년 ~ 2024년(3년)
- 운영대상: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 운영범위: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동광동(40계단 주변) 일대
- 사업비: 금450,000천원 내외(시비/연간사업비)

※최종사업비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내용: 창작공간 확보·운영·관리, 입주예술가 지원, 시민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사업 등

※세부 운영내용

「부산광역시 제5기 원도심문화창작공간 운영계획」 요약

1. 입주작가 선정

가. 입주작가: 제4기 입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기존 입주작가 전원교체

나. 선발기준

- ① 사업목적, 설정 장르 및 공간에 적합한 작가 및 단체
- ② 창작성, 현실성 및 자립가능성, 경력 등 활동 가능성
- ③ 부산거주 및 부산출신 예술인 우선 선정
- ④ 예술장르별 입주작가 적정 비율 분배

다. 입주작가 지원조건

- ① 매월 15일 이상 의무 활동
- ② 지원기간 내 자생적 기반 갖출 것
- ③ 원도심창작공간 통합 사업에 의무 참여
- ④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2. 창작공간 내실과 및 장르 특화시설 구성

가. 창작공간의 양적 확대 보다는 물리적 환경개선 추진을 통한 창작공간 안정성 강화
(무의미한 양적 확대 지양)

나. 약 30개실 지원(공동 작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제외) ※전년대비 16개실 축소

다. 총 사업비의 60% 내외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편성

라. 안정하고 깨끗한 건물 위주로 계약 진행, 공간별 환경 편차 최소화

※기존 임대공간 전수조사에 따라 안정상의 문제 등 열악한 일부 공간의 경우 재계약을 금지하며,
관련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단체 선정 후 재단과 별도 협의

마. 예술분야별 창작공간 구성을 통한 공간별 특성화로 입주작가 교류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

※원도심 주변 문화예술공간 현황(5개소 40계단 반경 1km)

- 한성1918: 문화재단, 문화복합공간
- 용두산 미술의거리: 부산미협, 회화-공예 등 창작공간 및 아트마켓
- 국제미술의거리: 아트타운작가회, 미술분야 창작공간 및 아트마켓
- 보수동책방골목: 보수동 책방골목번영회, 인문학 복합공간
- 부평아트스페이스 등: 부산미협, 전시 및 창작공간

3. 입주작가 창작지원 강화

- 가. 단순한 창작공간 지원 수준을 넘어 입주작가 창작지원 및 제반 여건 보장으로 역량강화 및 자립 도모
- 나. 입주작가 창작역량 강화에 중심을 둔 사업 편성
- 다. 창작지원금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자립 지원 권장

4. 내년 자체사업 평가 계획 수립

5. 기타 세부사항은 선정 후 재단과 사전협의 후 추진가능

○ 추진일정 ※세부일정은 내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기대비 개선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관련

- ▶ 근거: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사업자 지원금 관리운영 내규」 제8조 제4항
- ▶ 내용: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 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내 부가세 환급금이 환급 될 경우 사업에 재투자 가능하지만, 연내에 부가세 환급금이 환급되지 않을 경우 반납

2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제5기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 사업 <또따또가> 운영단체 공모
- 공모기간: 2021. 11. 30.(화) ~ 12. 13.(월), 16시까지
- 운영대상: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동광동(40계단 주변) 일대
- 공모내용

| 구 분 | 내 용 |
|-------------|--|
| 공모 및 접수 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 2021. 11. 30. (화) ~ 12. 13. (월) (14일간) ○ 접수기간: 2021. 11. 30. (화) ~ 12. 13. (월), 16:00 도착분까지 (14일간) |
| 지원대상 및 자격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임의단체 불가)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 한 단일 용역분야 4천만원(부가가치세, 대행료 포함)이상의 실적이 있는 단체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문화예술관련 시설물 운영 및 창작공간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
| 제출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수] 서식1. 제5기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신청서 1부. ② [필수] 서식2. 단체소개서 7부. ③ [필수] 서식3. 제5기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사업 운영계획서 7부. ④ [필수] 서약서 및 사업신청동의서 각 1부 ⑤ [필수] 단체 증빙서류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⑥ [필수] 자격사항 증빙자료 1부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⑦ [필수] 발표용 PPT 또는 PDF 자료 (출력본 7부, 10분 이내 분량) ※원본파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 된 PPT는 심의당일에 발표자료로 사용 ⑧ [선택] 포트폴리오(기타 활동증빙자료 등) 7부 |
| 접수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신청서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16:00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2층 문화공간팀 / [문의] 051-745-7244 - 접수방법 ①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불가) ② 발표용 PPT 또는 PDF자료는 이메일 접수(rreworld@bscf.or.kr) ※ 지원서 및 기타 자료 제출 후 수정 및 추가제출 불가 - 접수가능 시간: 09:00 ~ 16:00 접수 가능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주말, 휴무일은 접수하지 않음) |
| 지원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0백만원 ※최종사업비는 추후변동가능 매년 12월 중 확정 |

○ 신청제한 사항(단체 대표 및 구성원)

-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지자체 산하관리기관
- 국립 및 지자체 산하 직접 관공기관, 방송국, 소속사 소속의 개인 혹은 단체
- 순수 문화예술활동 주목적이 아닌 학교, 기관(시설), 특정 종교집단, 친교기관 등
- 개인(사립)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일회적 성격의 행사운영 중심 단체
-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 위주의 기관 및 단체
- 일반 성인 및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동호인 단체
- 2020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 정산제출기한을 초과한 개인/단체, 2018년도~2020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미수행한 자
- 각종 국·시·비 지원금 정산 미납자
-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자 관련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또는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보조금 위반 행위자 (관련 법령·규정의 위반 행위 처리 기준에 따름)
- 지원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 지원 시 유의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금액에 맞춰 수행계획서 및 소요 예산(안)을 수정하여 진행해야 함.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확정 후에도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신청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밝혀질 경우, 모든 지원 금액은 환수 될 수 있으며, 부산문화재단 내 지원 사업에 배제 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예산 항목 이외의 목적과 자산취득 및 타 자금과 혼용이 불가능함.
-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 환급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집행

○ 예산 편성기준(안)

| 목 | 내 용 | 비고 | | | | |
|--|---|--------------------------------|-----|-----------------|----------|-------------------------|
| <p>임대료 및 유지보수비 (필수사항)</p> | <p>(예시)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공간 확보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30개실 지원(공동 작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제외) ○ 예술분야별 창작공간 구성을 통한 공간별 특성화 ○ 무분별한 입주공간 확대를 벗어난 실질적인 창작공간 확보 ○ 창작공간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안정성 강화 <p>▶ 책정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비: 보안업체, 시설보험료, 시설 임대료 등 포함 - 유지보수비: 시설 및 장비 보수 유지비 등 | <p>총 사업비 60% 내외</p> | | | | |
| <p>기획 사업비 (필수사항)</p> | <p>(예시) 아래의 내용은 예시로 단체 특성에 맞는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사업 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작가창작지원 프로그램 ○ 원도심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입주작가 교류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 ○ 원도심내 창작공간 연계 시민 향유 프로그램 활성화 등 ○ 기획사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p>총 사업비 15% 이상</p> | | | | |
| <p>인건비 (자율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여야함 -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으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포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퇴직급여 총당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보상비 지급 가능 | <p>자율 사항</p> | | | | |
| <p>운영비 (자율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전기료, 전화/인터넷사용 등 ○ 용역비: 청소용역, 방역비(필수) ○ 운영비: 사무운영, 회의비, 간담회비 등 ○ 홍보비 책정가능 ○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등 | <p>자율 사항</p> | | | | |
| <p>운영비 (필수사항)</p> | <p><회계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하여 예산 편성 ○ 회계사는 재단 지정 회계사로 정산검토 추진 예정 <table border="1" data-bbox="371 1447 986 1547"> <thead> <tr> <th>기준금액</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td> <td>985,000원</td> </tr> </tbody> </table> | 기준금액 | 수수료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985,000원 | <p>필수 사항</p> |
| 기준금액 | 수수료 | | | | | |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985,000원 | | | | | |
| <p>자부담</p> | <p>-</p> | <p>자율 사항</p> | | | | |
| <p>※예산편성 비율이 자율사항일 경우 신청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함.</p> | | | | | | |

3

심의기준

□ 심의개요

- 심의분야: 제5기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단체 선정
- 심의대상: 지원신청단체
- 추진근거: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
- 주요 심의기준

| 평가영역 | 평가지표 | 평가기준(100점 기준) | 상 | 중 | | 하 |
|-------------------------|---------------------------|------------------------------------|------------|-----------|-----------|-----------|
| | | | | 중상 | 중하 | |
| 가. 사업 수행능력 (50점) | A. 조직·인력 운용능력 | A1.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3 |
| | B. 기획사업 운영능력 | B1. 기획사업의 참신성 | 10 | 8 | 6 | 3 |
| | | B2. 기획사업의 적정성 | 5 | 4 | 3 | 1 |
| | C. 시설단체 운영능력 | C1.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1 |
| | | C2. 사업계획서상의 예산편성 적정성 | 5 | 4 | 3 | 1 |
| | | C3.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입주작가 창작활동비 지원가능 등) | 5 | 4 | 3 | 1 |
| | | C4. 시설 보수, 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 5 | 4 | 3 | 1 |
| | C5. 시설이용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1 | |
| 합계 | | | 50 | 40 | 30 | 12 |
| 나. 공신력 (40점) | D. 단체 적격성 | D1. 운영시설과 운영희망 단체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연계성 | 7 | 5 | 3 | 1 |
| | | D2. 단체 구성원이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데 적합 여부 | 7 | 5 | 3 | 1 |
| | E. 단체 사업능력 | E1.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경험(기간)등 실적 | 7 | 5 | 3 | 1 |
| | | E2. 신청단체의 운영능력대비 운영 시설수의 적정성 | 7 | 5 | 3 | 1 |
| | | E3. 시설 개·보수 재정 확보방안의 적정성 | 7 | 5 | 3 | 1 |
| | E4. 단체대표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추진의지 | 5 | 4 | 3 | 1 | |
| 합계 | | | 40 | 29 | 18 | 6 |
| 다.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 F. 지역사회 협력·평가 | F1. 신청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 5 | 4 | 3 | 1 |
| | | F2.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진흥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평가 | 5 | 4 | 3 | 1 |
| 합계 | | | 10 | 8 | 6 | 2 |
| 전체 합계 | | | 100 | 77 | 54 | 20 |

○ 심의방법 및 절차: 서류 및 PT 통합심의로 채점제 및 합의제 병행

▶ 행정심의: 제출서류 사전 검토 후 적격 여부 확인

▶ 서류 및 PT 심의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우선 검토

- PT발표 및 심의위원 심층 질의응답(PT발표 10분, 질의 10분)

- 심의위원 개별 채점표 작성 후 합계점수의 평균점 산출

- 최종 선정자는 개별 채점표 집계 결과를 토대로 집중 토론에 의한 합의제로 선정자를 최종결정하되,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제안에 참가한 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단독 심사·의결

심의배제사항

- 지원신청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 신청제한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심의 배제사항에 해당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음

[별첨 1]

심의평가기준(안)

□ 평가기준 설정근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 제1항) 준용

제6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1. 8. 1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구·군간의 균형분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③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 ▶ 책임능력과 공신력
- ▶ 운영 대상기관의 기능과 운영사무와의 관련성

□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 평가영역 :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3개 영역

○ 평가지표

- ▶ 사업수행능력 : 조직·인력운용능력, 시설운영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 공신력 : 단체의 적격성, 단체의 사업능력
- ▶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사회협력 및 문화예술 활동 평가

○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및 배점

| 총 계 | 항목별 배점 | | |
|------|--------|-----|----------|
| | 사업수행능력 | 공신력 | 지역사회 기여도 |
| 100점 | 50점 | 40점 | 10점 |

[별첨 2]

총괄표

| 평가영역 | 평가지표 | 평가기준(100점 기준) | 상 | 중 | | 하 |
|-------------------------|---------------------------|------------------------------------|------------|-----------|-----------|-----------|
| | | | | 중상 | 중하 | |
| 가. 사업 수행능력 (50점) | A. 조직·인력 운용능력 | A1.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3 |
| | B. 기획사업 운영능력 | B1. 기획사업의 참신성 | 10 | 8 | 6 | 3 |
| | | B2. 기획사업의 적정성 | 5 | 4 | 3 | 1 |
| | C. 시설단체 운영능력 | C1.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1 |
| | | C2. 사업계획서상의 예산편성 적정성 | 5 | 4 | 3 | 1 |
| | | C3.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입주자가 창작활동비 지원가능 등) | 5 | 4 | 3 | 1 |
| | | C4. 시설 보수, 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 5 | 4 | 3 | 1 |
| | C5. 시설이용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1 | |
| 합계 | | | 50 | 40 | 30 | 12 |
| 나. 공신력 (40점) | D. 단체 적격성 | D1. 운영시설과 운영희망 단체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연계성 | 7 | 5 | 3 | 1 |
| | | D2. 단체 구성원이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데 적합 여부 | 7 | 5 | 3 | 1 |
| | E. 단체 사업능력 | E1.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경험(기간)등 실적 | 7 | 5 | 3 | 1 |
| | | E2. 신청단체의 운영능력대비 운영 시설수의 적정성 | 7 | 5 | 3 | 1 |
| | | E3. 시설 개·보수 재정 확보방안의 적정성 | 7 | 5 | 3 | 1 |
| | E4. 단체대표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추진의지 | 5 | 4 | 3 | 1 | |
| 합계 | | | 40 | 29 | 18 | 6 |
| 다.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 F. 지역사회 협력·평가 | F1. 신청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 5 | 4 | 3 | 1 |
| | | F2.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진흥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평가 | 5 | 4 | 3 | 1 |
| 합계 | | | 10 | 8 | 6 | 2 |
| 전체 합계 | | | 100 | 77 | 54 | 20 |

세부 배점기준

○ A1.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10) |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인력운용 방안이 매우 탁월함 |
| 중상(8) |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인력운용 방안이 우수함 |
| 중하(6) |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인력운용 방안이 보통임 |
| 하(3) |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인력운용 방안이 미흡함 |

○ B1. 기획사업의 참신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10) | 신청 사업계획서상의 기획사업 계획이 매우 참신하다. |
| 중상(8) | 신청 사업계획서상의 기획사업 계획이 비교적 참신하다. |
| 중하(6) | 신청 사업계획서상의 기획사업 계획이 대체로 참신하지 않다. |
| 하(3) | 신청 사업계획서상의 기획사업 계획이 아주 참신하지 않다. |

○ B2. 기획사업의 적정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5) | 신청 사업계획서상의 기획사업 계획이 매우 적정하다 |
| 중상(4) | 신청 사업계획서상의 기획사업 계획이 비교적 적정하다 |
| 중하(3) | 신청 사업계획서상의 기획사업 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 하(1) | 신청 사업계획서상의 기획사업 계획이 아주 적정하지 않다 |

○ C1.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5) | 사업운영 운영계획이 매우 적정하다. |
| 중상(4) | 사업운영 운영계획이 비교적 적정하다. |
| 중하(3) | 사업운영 운영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 하(1) | 사업운영 운영계획이 아주 적정하지 않다. |

○ C2. 사업 운영계획서상의 예산편성 적정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5) | 신청 사업 운영계획서상의 예산편성은 매우 적정하다. |
| 중상(4) | 신청 사업 운영계획서상의 예산편성은 비교적 적정하다. |
| 중하(3) | 신청 사업 운영계획서상의 예산편성은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 하(1) | 신청 사업 운영계획서상의 예산편성은 아주 적정하지 않다. |

○ C3.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입주작가 창작활동비 지원가능 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12) | 시설 운영계획이 매우 적정하다. |
| 중상(9) | 시설 운영계획이 비교적 적정하다. |
| 중하(6) | 시설 운영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 하(3) | 시설 운영계획이 아주 적정하지 않다. |

○ C4. 시설 보수, 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12) | 시설 보수, 관리 계획 등이 매우 적정하다. |
| 중상(9) | 시설 보수, 관리 계획 등이 비교적 적정하다. |
| 중하(6) | 시설 보수, 관리 계획 등이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 하(3) | 시설 보수, 관리 계획 등이 아주 적정하지 않다. |

○ C5. 시설이용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5) | 문화예술시설 이용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매우 우수하다. |
| 중상(4) | 문화예술시설 이용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비교적 적정하다. |
| 중하(3) | 문화예술시설 이용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 |
| 하(1) | 문화예술시설 이용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아주 적정하지 않다 |

○ D1. 운영시설과 운영희망 단체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 연계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7) |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문화예술분야 명시, 내용이 만족스러움 |
| 중상(5) |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문화예술분야 명시, 내용 보통. |
| 중하(3) |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문화예술분야 명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음 |
| 하(1) |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문화예술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D2. 단체구성이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

| 배점 | 평가내용 |
|-------|--|
| 상(7) | 단체 구성이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
| 중상(5) | 단체 구성이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
| 중하(3) | 단체 구성이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적절하게 구성 되어 있지 못하다. |
| 하(1) | 단체의 구성이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

○ E1.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경험(기간)등 실적

| 배점 | 평가내용 |
|-------|-------------------------------------|
| 상(7) | 신청단체가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적 또한 매우 우수하다 |
| 중상(5) | 신청단체가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보통이다 |
| 중하(3) | 신청단체가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흡하다 |
| 하(1) | 신청단체가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없다. |

○ E2. 신청단체의 운영능력대비 운영 시설수의 적정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6) | 신청단체는 공간 운영과 실적대비 창작공간 운영 시설수가 매우 적정하다. |
| 중상(4) | 신청단체는 공간 운영과 실적대비 창작공간 운영 시설수가 비교적 적정하다. |
| 중하(3) | 신청단체는 공간 운영과 실적대비 창작공간 운영 시설수가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 하(1) | 신청단체는 공간 운영과 실적대비 창작공간 운영 시설수가 아주 적정하지 않다. |

○ E3. 시설 개·보수 재정 확보방안의 적정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6) | 시설 개·보수 재정확보 방안이 매우 적정하다. |
| 중상(4) | 시설 개·보수 재정확보 방안이 비교적 적정하다. |
| 중하(3) | 시설 개·보수 재정확보 방안이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 |
| 하(1) | 시설 개·보수 재정확보 방안이 아주 적정하지 않다. |

○ E4. 단체대표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추진의지

| 배점 | 평가내용 |
|-------|-----------------------------|
| 상(5) | 단체 대표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추진의지가 탁월하다 |
| 중상(4) | 단체 대표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추진의지가 우수하다 |
| 중하(3) | 단체 대표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추진의지가 보통이다 |
| 하(1) | 단체 대표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추진의지가 미흡하다 |

○ F1. 신청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 배점 | 평가내용 |
|-------|------------------------------------|
| 상(5) | 신청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유기적이다. |
| 중상(4) | 신청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비교적 긴밀하고 유기적이다. |
| 중하(3) | 신청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거의 없다 |
| 하(1) | 신청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전혀 없다. |

○ F2. 신청단체의 문화체육진흥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평가(언론보도, 표창 등)

| 배점 | 평가내용 |
|-------|--|
| 상(5) |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행사 개최 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평가가 매우 우수하다. |
| 중상(4) |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행사 개최 등 문화예술진흥 활동에 대한 지역 사회 평가가 비교적 우수하다. |
| 중하(3) |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행사 개최 등 문화예술진흥 활동에 대한 지역 사회 평가가 대체적으로 보통이다. |
| 하(1) | 신청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행사 개최 등 문화예술진흥 활동에 대한 지역 사회 평가가 아주 미흡하다. |